

# 2014년 강사료 지급기준표(개정안)

※ 개정 기준(안) 적용 : '14. 7. 1

## 1.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등 급	대 상 (전·현직 포함)	지 급 액		비 고
		기 본 1 시 간	초 과 시 간	
특 별 1 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교 총장(급)</li> <li>○ 인간문화재(무형문화재보유자)</li> <li>○ 대기업(상시 근로자수 1,000명 이상) 총수, 국영기업체 사장</li> <li>○ 장관(급), 국회의원, 광역지방자치단체장, 대사</li> <li>○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언론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/ul>	400,000	300,000	
특 별 2 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과대학장(급) 교수 이상</li> <li>○ 차관(급)</li> <li>○ 광역지방의회의원, 기초자치단체장</li> <li>○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장, 특별행정기관장</li> <li>○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언론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</li> </ul>	300,000	200,000	
일 반 1 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(교) 교수</li> <li>○ 컨설턴트(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)</li> <li>○ 판검사, 변호사, 전문의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</li> <li>○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</li> <li>○ 예술인, 종교인, 언론인</li> <li>○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</li> <li>○ 기초지방의회의원</li> <li>○ 3급 이상, 45급(박사학위 소지) 공무원</li> <li>○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언론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</li> </ul>	230,000	120,000	
일 반 2 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(교) 전임강사</li> <li>○ 연구기관의 연구원</li> <li>○ 일반 컨설턴트</li> <li>○ 45급 공무원</li> <li>○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언론, 종교,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</li> </ul>	120,000	100,000	
일 반 3 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6급 이하 공무원</li> <li>○ 기타 상급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</li> </ul>	80,000	50,000	
보 조 강 사	○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	40,000	40,000	
원 어 강 의	○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% 지급	-	-	
별도기준적용	○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1,000,000 이내	1,000,000 이내	

※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
 ※ 승진예정자 및 대우공무원 상위 직급 인정

## 2.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등 급	대 상 (전·현직 포함)	지 급 액		비 고
		기 본 1 시 간	초 과 시 간	
정보화 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li>대학교수,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</li> </ul>	150,000	100,000	
정보화 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li>박사학위, 기술사소지자,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, ※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</li> </ul>	100,000	80,000	
			※50,000	
정보화 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li>정보화강사1,2이외의 강사, ※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</li> </ul>	80,000	70,000	
			※50,000	
보조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</li> </ul>	40,000	20,000	
사이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, 질의응답,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</li> </ul>	20,000(1일)	-	

## 3. 자문·지도 강사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지급기준	지급액	지 급 대 상
교육 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	1시간	1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, 간담회 등 참석자</li> <li>교육과정 설계자문·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</li> </ul>

## 4.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인 원	5인 이하	6 ~ 10인	11인 이상
	1시간		500,000	600,000

### ※ 참고사항

- 1)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%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
- 2)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

## 5. 강사료 산정기준

### 1) 강의시간 산출

-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%를 지급하고,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

2)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

- 원칙 : 일자별 산정 방식
- 세부내역
  -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(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)
  -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
  -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

6. 여비 산정 기준 :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 「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」에 따라 별도 지급